

교원 업적평가 개선 위원회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본 대학교 교원 업적평가 개선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법무실장, 기획처장, 교무처장, 산학협력단장(이상 “당연직 위원”이라 한다), 당연직 위원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한다.(개정 2015. 5. 1)
② 위원장은 교무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 이외의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단, 보직교수는 보직 재임 기간으로 한다).
⑤ 필요시 계열별로 특별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간사는 교무처 교무팀장이 된다.

제3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회무를 통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 (회의) ① 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위원이 아닌 자를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 할 수 있다.

제5조 (기능) 위원회는 위원장이 안건으로 부의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원 업적평가 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2. 교원 업적평가 규정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기타 교원 업적평가에 관련된 중요 사항 심의

제6조 (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3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